

행정기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구 미 시

행정기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4.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가. '24. 7. 1.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변경사항 정비
- 나. 상위법령 개정으로 불부합하거나 인용 자치법규 개정사항을 미반영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시민의 자치법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변경사항 정비 (안 제1장: 안 제1조~제8조)
- 나. 상위법령 불부합 정비 (안 제2장 : 안 제9조~제14조)
- 다. 자치법규 인용사항 정비 (안 제3장 : 안 제15조~제49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도서관법」, 「물환경보전법」, 「주택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2)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행정기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장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변경사항 정비

제1조(「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국장

제2조(「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1호의 주관부서란 중 “상하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본부”로 하고, 같은 표 제13호의 주관부서란 중 “상하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본부”로, “건축과”를 “건축디자인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의 실무반의 2)가)긴급생활 안정지원반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별표 4 제1호나목의 실무반의 2)가)긴급생활 안정지원반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별표 4 제1호다목의 실무반의 2)가)긴급생활 안정지원반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별표 4 제2호가목의 실무반의 2)가)긴급생활 안정지원반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별표 4 제2호나목의 실무반의 2)가)긴급생활 안정지원반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별표 4 제2호다목의 실무반의 2)가)긴급생활 안정지원반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별표 5 제1호의 실무반의 2)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제3조(「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의 개정)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4조(「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평생학습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를 “관장”으로 한다.

제5조(「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호 중 “업무담당계장”을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6조(「구미시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중 “상하수도사업소장등”을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등”으로 한다.

제7조(「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부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본부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권한을 상하수도사업소장”을 “권한을 상하수도사업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구미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의 개정) 구미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본부장”으로 한다.

제2장 상위법령 불부합 정비

제9조(「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조”를 “조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제2조제13호 중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을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를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6조”를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조”로 한다.

제20조 중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1조제4항”을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으로 한다.

제10조(「구미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 개정) 구미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를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로 한다.

제11조(「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의 개정)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 「도서관법」 제30조제2항”을 “ 「도서관법」 제34조제3

항”으로 한다.

제12조(「구미시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 단서 중 “20세대”를 “50세대”로 한다.

제6조의4제1항 중 “20세대”를 “50세대”로 한다.

별표3의 가정용의 구분내역란 기호(·) 중 “지체장애자”를 “지체장애인”으로 한다.

제13조(「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폐수처리수”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제14조(「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의 개정)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으로 한다.

제3장 자치법규 인용사항 정비

제15조(「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구미시 재무회계규칙」”을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6조(「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7조(「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의 개정) 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8조(「구미시 문화예술진흥 지원 및 기금 운용 조례」의 개정) 구미시 문화예술진흥 지원 및 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7조 중 “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 ”을 “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19조(「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의 개정) 구미

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 ”을 “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20조(「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의 개정) 구미시 4-H

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 ”을 “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21조(「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의 개정) 구미시 농

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 ”을 “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22조(「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의 개정) 구미시 과학기술 진

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3조(「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4조(「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구미시 재무회계규칙”을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5조(「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6조(「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구미시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구미시 재무회계규칙」”을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7조(「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의 개정) 구미시 종합장사 시설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8조(「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의 개정) 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9조(「구미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구미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0조(「구미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의 개정) 구미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구미시 재무회계규칙”을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1조(「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2조(「구미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구미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3조(「구미시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구미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4조(「구미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구미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6조 중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
칙」”으로 한다.

제35조(「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구
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9조 중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
칙」”으로 한다.

제36조(「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의 개정) 구미시 식품진흥
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
한 규칙」”으로 한다.

제37조(「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

칙」”으로 한다.

제38조(「구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개정) 구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및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및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9조(「구미시 자연보호운동발상지 관리 및 자연보호단체 육성지원 조례」의 개정) 구미시 자연보호운동발상지 관리 및 자연보호단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0조(「구미시 환경기본 조례」의 개정) 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1조(「구미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구미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 ”을 “,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42조(「구미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구미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 「구미시 재무회계규칙」 ”을 “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43조(「구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구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본문 중 “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44조(「구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의 개정) 구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45조(「구미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구미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6조(「구미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구미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7조(「구미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의 개정) 구미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8조(「구미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구미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9조(「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1. 교육부	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정보통신과
3. 외교부	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
4. 법무부	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5. 국방부	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6. 행정안전부	가. 시 청사시설 사고 1. 나.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2. 다. 화재·위험물 사고 3. 라.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4. 마.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5. 바.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회계과 안전재난과
7. 문화체육관광부	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해당실과 (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8. 농림축산식품부	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	축산과 농촌활력과
9. 산업통상자원부	6.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7. 나. 원유 수급 사고 8. 다.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9. 라. 전력 사고 10. 마.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전력산업과

10. 보건복지부	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11. 환경부	11.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12.나.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13.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14.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15.마. 황사	환경정책과 상하수도사업본부
12. 고용노동부	16.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기업지원과
13. 국토교통부	17.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18.나. 고속철도 사고 19.다.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20.라. 도로터널 사고 21.마.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22.바. 육상화물운송 사고 23.차.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도로철도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상하수도사업본부 대중교통과 건축디자인과
14. 해양수산부	24.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25.나. 조수(潮水) 26.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27.라. 해양 선박 사고	-
15. 금융위원회	가.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정보통신과
16.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원자력안전 사고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
17. 문화재청	28.가.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예술과
18. 산림청	가. 산불 나. 산사태	산림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제2조>

[별표 4]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7조제1항제1호 관련)

1. 호우·대설·태풍 시 편성기준

가. 비상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행정안전국장		
통 제 관	주관부서 실(국)장 또는 재난업무 담당 실(국)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실 무 반	인 원	총 4+a명	
	반 장	재난업무 담당	
	1)상황관리 총괄반 (3명)	재난정보 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3명)	· 재난상황관리반 3명 - 재난상황관리반(2+a) - 재난상황근무자(1+a)
	2)협업기능반 (a)	가) 긴급생활 안정 지원반	·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 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정보통신과
		라) 시설피해 응급 복구반	· 시설관리부서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 복구반	· 전략산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홍보담당관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재난과

	아) 교통대책반	· 대중교통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구미보건소 · 선산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새마을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구미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구미소방서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재난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비상1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행정안전국장		
통 제 관	주관부서 실(국)장 또는 재난업무 담당 실(국)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실 무 반	인 원	총 11+ α + β 명	
	반 장	안전재난 담당	
	1)상황관리 총괄반 (10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3명)	· 재난상황관리반 3명 - 재난상황관리반(2+ α) - 재난상황근무자(1+ α)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주관부서 직원 2명
	라) 행정지원팀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무과 직원 1명
2)협업기능반 (a)	가) 긴급생활 안정 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 정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통신과
	라) 시설피해 응급 복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관리부서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 복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산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담당관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재난과
	아) 교통대책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교통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마을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미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미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상청, 경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교(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비상2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행정안전국장			
통 제 관	주관부서 실(국)장 또는 재난업무 담당 실(국)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실 무 반	인 원	총 17+a+β명		
	반 장	안전재난 담당		
	1)상황관리 총괄반 (16+a 명)	가) 재난정보 수집 ·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5명)	· 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재난상황관리반(3+a) - 재난상황근무자(2+a)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7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주관부서 직원 5명	
라) 행정지원팀 (1명)		· 총무과 직원 1명		

2)협업기능반 (a)	가) 긴급생활 안정 지원반	·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 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정보통신과
	라) 시설피해 응급 복구반	· 시설관리부서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 복구반	· 전략산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홍보담당관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재난과
	아) 교통대책반	· 대중교통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구미보건소 · 선산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새마을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구미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구미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기상청, 경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 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지진(해일)·화산 시 편성기준

가. 구미시 비상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행정안전국장		
통 제 관	주관부서 실(국)장 또는 재난업무 담당 실(국)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실 무 반	인 원	총 4+a명	
	반 장	재난업무 담당	
	1)상황관리 총괄반 (3명)	재난정보 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3명)	· 재난상황관리반 3명 - 재난상황관리반(2+a) - 재난상황근무자(1+a)
	2)협업기능반 (a)	가) 긴급생활 안정 지원반	·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 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정보통신과
		라) 시설피해 응급 복구반	· 시설관리부서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 복구반	· 전략산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홍보담당관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재난과
아) 교통대책반		· 대중교통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구미보건소 · 선산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새마을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구미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구미소방서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재난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비상1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행정안전국장			
통 제 관	주관부서 실(국)장 또는 재난업무 담당 실(국)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실 무 반	인 원	총 11+a+β명		
	반 장	안전재난 담당		
	1)상황관리 총괄반 (10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3명)	· 재난상황관리반 3명 - 재난상황관리반(2+a) - 재난상황근무자(1+a)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라) 행정지원팀(1명)		· 총무과 직원 1명		

2)협업기능반 (α)	가) 긴급생활 안정 지원반	·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 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지원 반	· 정보통신과
	라) 시설피해 응급 복구반	· 시설관리부서
	마) 에너지 공급 피 해시설 기능복 구반	· 전략산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홍보담당관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재난과
	아) 교통대책반	· 대중교통과
	자) 의료·방역서비 스 지원반	· 구미보건소 · 선산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새마을과
	카) 사회질서 유지 반	· 구미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 급반	· 구미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기상청, 경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자 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한국가스공 사, 한국전력공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 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비상2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행정안전국장			
통 제 관	주관부서 실(국)장 또는 재난업무 담당 실(국)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실 무 반	인 원	총 17+ α + β 명		
	반 장	안전재난 담당		
	1)상황관리 총괄반 (16+ α 명)	가) 재난정보 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5명)	· 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재난상황관리반(3+ α) - 재난상황근무자(2+ α)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7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주관부서 직원 5명	
		라) 행정지원팀(1명)	· 총무과 직원 1명	
	2)협업기능반 (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정보통신과	
		라) 시설피해 응급 복구반	· 시설관리부서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 복구반	· 전략산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홍보담당관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재난과
	아) 교통대책반	· 대중교통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구미보건소 · 선산보건소
	차) 자원봉사지원 및 관리반	· 새마을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구미경찰서
	타) 수색, 구조· 구급반	· 구미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기상청, 경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자 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한국가스공 사, 한국전력공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 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2조>

[별표 5]

사회재난 발생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행정안전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업무 담당 실(국)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실 무 반	인 원	총 8+α+β+γ명	
	반 장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담당	
	1)재난상황 총괄반 (7명)	가) 상황관리 총괄팀(3명)	·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나) 수습상황 파악팀(4명)	·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3명
	2)협업기능반 (α)	가) 긴급생활 안정 지원반	·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 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	· 정보통신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시설관리부서
		마) 에너지 공급 피해 시설 기능복구반	· 전략산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홍보담당관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재난과	
아) 교통대책반	· 대중교통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구미보건소 · 선산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새마을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구미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구미소방서
	재난대응협업반(β)	· 육군제50사단, 구미경찰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가스안전공사대구경북본부, 한국전력공사대구경북본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현장지원반(γ)	· 해당 재난관리 실·국 소속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2조>

[별표 3]

업종별 구분표 (조례 제30조 관련)

업종별	구분내역
가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또는 공용 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포, 철물 등의 소매점 및 부동산중개업,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서 10㎡미만의 소규모 가게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노인)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 신문보급소, 지체장애인이 경영하는 점술 및 지압업소 • 공동주택 단지내 관리사무소·경비실·공동 화장실·노인정·운동시설(영업행위를 하는 운동시설 제외)등에 대한 급수 •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일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업종에 속하지 않은 모든 급수 • 임시급수(최종단계 요율적용) •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량 (최종단계 요율적용)
욕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욕장업(「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필한 목욕장) 단, 바닥면적(탈의실, 욕실, 욕조포함)이 330㎡이하인 목욕장은 일반용
전용 공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별도 설치한 전용관에 의한 급수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장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변경사항 정비

□ 제1조(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p>1. 행정안전국장</p> <p>2. (생략)</p>	<p>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1. <u>경제국장</u></p> <p>2. (현행과 같음)</p>

□ 제3조(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사전협의)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u>기획예산담당관</u> 또는 업무담당 부서장은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처리절차가 규정되어 있을 경우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p>	<p>제10조(사전협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정책기획과</u> ----- ----- ----- ----- -----.</p>

□ 제4조(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1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u>평생</u> <u>학습원장</u> (이하 “원장”이라 한 다)은 「도서관법」 제30조제2 항에 따라 구미시립도서관운영 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 다)를 운영한다. ② ~ ⑥ (생략)	제1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u>관장</u> -----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 제5조(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행	개정안
제27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생략) 2. 기금출납원 : <u>업무담당계장</u>	제27조(기금관리공무원) ----- ----- -----. 1. (현행과 같음) 2. ----- <u>업무담당팀장</u>

□ 제6조(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현행	개정안
제52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u>상하수도사업소장</u> 등에 게 위임할 수 있다.	제52조 (권한의 위임) ----- ----- ----- ---- <u>상하수도사업본부장</u> 등-- -----.

□ 제8조(구미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생략) ②관리자는 <u>상하수도사업소장</u> 으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u>상하수도사업본부장</u> -----.

제2장 상위법령 불부합 정비

□ 제9조(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조에 따라 구미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미시(이하“시”라 한다)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 ----- -----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2. (생략) 13.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	제2조(정의) ----- ----- 1. ~ 12. (현행과 같음) 13. ----- <u>함은 「벤처</u>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14. (생략)

제10조(융자대상) 운전자금의 융자대상자는 시 관할지역내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1. ~ 4. (생략)

5.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기업

6. (생략)

제15조(융자대상) 시설자금의 융자대상자는 시 관할지역내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1. ~ 9. (생략)

10.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기업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

-----.

14. (현행과 같음)

제10조(융자대상) -----

-----.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6. (현행과 같음)

제15조(융자대상) -----

-----.

1. ~ 9. (현행과 같음)

<삭제>

<p>11. 「<u>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u>」 제18조 규정에 의거 벤처기업전용단지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설치사업자로 지정받은자 및 「<u>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u>」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내의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사업자로 계약체결된 비영리 법인</p> <p>12. · 13. (생략)</p> <p>제20조(지원대상) 시장은 지방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u>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u>」 제71조제4항에 따른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p>	<p>11. 「<u>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u>」 제18조 ----- ----- ----- ----- 「<u>소프트웨어 진흥법</u>」 제6조----- ----- ----- -----</p> <p>12. · 13. (현행과 같음)</p> <p>제20조(지원대상) ----- ----- ----- 「<u>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u>」 제71조제4항----- -----.</p>
--	---

□ 제10조(구미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방위 중소·벤처기업”이란 방위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p>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 -----.
---	--

□ 제11조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평생 학습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도서관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구미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 ⑥ (생략)	제1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 ---- 「도서관법」 제34조제3항----- ----- -----. ② ~ ⑥ (현행과 같음)

□ 제12조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 (전용급수설비의 설치) ①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1개를 설치한다. 1. (생략) 2. 동일관리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다만,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20	제6조의2 (전용급수설비의 설치) ① ----- ----- -----. 1. (현행과 같음) 2. ----- -----. ----- 50

□ 제14조(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1조(준용) 과학기술 진흥사업 및 관련사업의 경비보조, 위탁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기술 혁신사업 공동운영 요령」 및 「<u>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u>」에서 정한 바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 등에 따른다.</p>	<p>제11조(준용) ----- ----- ----- ----- ----- 「<u>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u>」----- ----- ----- ----- ----- -----.</p>

제3장 자치법규 인용사항 정비

□ 제15조(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행	개정안
<p>제29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생략) ②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u>구미시 재무회계규칙</u>」을 준용한다.</p>	<p>제29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u>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p>

□ 제16조(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상레저안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구미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제18조(준용) ----- ----- ----- ----- -----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제17조(구미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현행	개정안
제13조(회계관리) ①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 관리는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제규정을 준용한다. ②·③ (생략)	제13조(회계관리) ① ----- -----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②·③ (현행과 같음)

□ 제18조(구미시 문화예술진흥 지원 및 기금 운용 조례)

현행	개정안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제17조(준용) ----- -----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 제19조(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준용) ----- ----- -----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20조(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은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 -----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제21조(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 및 「구미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26조(준용) ----- -----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제22조(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준용) 과학기술 진흥사업 및 관련사업의 경비보조, 위탁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기술 혁신사업 공동운영 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서 정한 바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 등에 따른다.</p>	<p>제11조(준용) ----- ----- ----- ----- ----- ----- ----- -----,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p>

□ 제23조(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6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① (생 략) ② 직무위임은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6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p>

□ 제24조(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생략) ②제1항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u>구미시재무회계규칙</u> 을 준용한다.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 제25조(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기금의 집행은 「구미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 ----- ----- -----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제26조(구미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구미시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준용) ----- ----- -----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27조(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준용) ----- -----,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28조(구미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준용) ----- -----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29조(구미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준용) ----- ----- --,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30조(구미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현행	개정안
<p>제5조(납부한 부담금) ① (생략)</p> <p>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u>구미시 재무회계규칙</u>을 따른다.</p>	<p>제5조(납부한 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p>

□ 제31조(구미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현행	개정안
<p>제6조(회계관리) 도시개발사업기금을 위한 회계관리는 제5조의 회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및 「<u>구미시 재무회계 규칙</u>」이 정한 일반회계의 수입·지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p>	<p>제6조(회계관리) ----- ----- ----- 「<u>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p>

□ 제32조(구미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u>구미시 재무회계 규칙</u>」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p>	<p>제8조(준용) ----- ----- 「<u>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p>

□ 제33조(구미시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준용) ----- ----- ----- -----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34조(구미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및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6조(준용) ----- ----- -----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제35조(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준용) ----- ----- -----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제36조(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현행	개정안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 ④ (생략) ⑤ 기금의 출납은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 제37조(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준용) ----- ----- ----- -----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38조(구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준용) ----- ----- ----- ----- 및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39조(구미시 자연보호운동발상지 관리 및 자연보호단체 육성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준용) ----- ----- ----- -----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40조(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현행	개정안
제3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34조(준용) ----- ----- ----- -----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41조(구미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구미시 지방	제14조(준용) ----- ----- ----- -----

보조금 관리 조례」,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 제42조(구미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구미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 ----- -----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43조(구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수당과 여비) ----- -----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제44조(구미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	제13조(수당 등) ----- -----

<p>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각 중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 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 「구미시 각 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p>
--	---

□ 제45조(구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구미시각중위원 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 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p>	<p>제19조(수당 등) ----- ----- 「구미시 각종 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p>

□ 제46조(구미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9조(협회의의 운영) ① ~ ③ (생 략) ④ 협회의의 회의에 참석한 위 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 미시각중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9조(협회의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구 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조례」-----.</p>

□ 제47조(구미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 ----- ----- 「구미시 각 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제48조(구미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산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9조(수당 등 지원)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지원) ----- ----- -----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제49조(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행	개정안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 ----- -----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관계법령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3.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

② 정부는 시·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7. 8. 3.>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 8. 3., 2009. 5. 21., 2010. 1. 27., 2011. 3. 9., 2014. 1. 14., 2016. 3. 22., 2016. 3. 29., 2016. 5. 29., 2018. 12. 31., 2019. 1. 8., 2020. 2. 11., 2023. 6. 20., 2024. 1. 9.>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

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삭제 <2020.2.11>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2. 11.>

[전문개정 2007. 8. 3.]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조(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기술자 현황, 소프트웨어사업자 현황, 소프트웨어산업 현황 및 소프트웨어융합 현황 등(이하 “소프트웨어산업정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자단체(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로 구성되어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또는 제6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요청받은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

2.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제6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서관법」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2017. 1. 17., 2018. 10. 16., 2021. 4. 13.>

17. “공공폐수처리시설”이란 공공폐수처리구역의 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수를 말한다. <개정 2018. 2. 9.>

1. 단독주택: 30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가. 법 제2조제2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리모델링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 1)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진입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가) 두 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가 10미터 이상일 것
 - 나)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진입도로는 제5조에 따른 도로와 통행거리가 200미터 이내일 것
-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과제"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 "연구개발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3. "연구개발비"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4. "영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대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공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비영리기관"이란 영리기관이 아닌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6. "정부출연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연구회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연구회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마.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바. 「암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립암센터

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7.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을 말한다.

8.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란 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중 연

구개발비의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서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통합이지바로(통합Ezbaro)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운영하는 통합알시엠에스(통합RCMS)를 말한다.

9. "간접비비율"이란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동안의 간접비를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이하 "수정직접비"라 한다)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10. "간접비고시비율"이란 간접비비율을 정하기 위한 기준비율로서 제1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별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11. "참여연구자"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 및 제14호에 따른 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 "연구지원인력"이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지원인력을 말한다.
13. "정산"이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종료를 말한다)되었을 때 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학생연구자"란 영 별표 2 비고 제1호에 따른 학생연구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를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
· 학사학위과정 · 석사학위과정 · 학석사통합과정 · 박사학위과정 · 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연구생으로 등록된 수료생을 포함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을 포함할 수 있다)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15.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한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16. "연구기관출연금"이란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3조제1항 등에 따라 정부가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에서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17. "학생인건비통합관리"란 학생인건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하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8.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이란 제86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19.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란 연구시설·장비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하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시설·장비비를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0.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이란 제100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실·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미래교육돌봄국, 경제국, 첨단산업국,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안전국, 사회복지국, 도시건설국 및 환경교통국을 둔다. <개정 2024.6.5.>

제5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 미래도시전략과, 세정과, 징수과 및 정보통신과를 둔다. <개정 2024.6.5.>

제8조(첨단산업국에 두는 과) ① 첨단산업국에 신산업정책과, 반도체방산과 및 전략산업과를 둔다. <개정 2024.6.5.>

제11조(사회복지국에 두는 과) ① 사회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및 생활안정과를 둔다. <개정 2024.6.5.>

제12조(도시건설국에 두는 과) ① 도시건설국에 도시계획과, 도로철도과, 하천과, 건축디자인과, 주택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4.6.5.>

제23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5.>

1. 구미시상하수도사업본부

- 가. 상·하수도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통제업무
- 나.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 집행 및 관리
- 다. 상·하수도 경리 및 세입·세출 결산
- 라. 상·하수도 사용료 및 기타수입의 과징
- 마. 시설물(상·하수도)의 확장, 신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
- 바. 취·정수, 생활·공업용수의 생산 및 수질검사, 송·배급수에 관한 사항
- 사. 상수원관리 및 상·하수도시설의 운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아. 간이상수도 업무에 관한 사항
- 자. 상·하수도 행정관련 업무
- 차. 하수처리장 업무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 카. 그 밖에 상·하수도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구미시립중앙도서관

- 가. 시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나. 독서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주관 및 문화강좌 운영
- 다.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 라.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소속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구미시위원회회의록작성및공개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21.>

부칙<구미시 규칙 제802호, 2024.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소 관 부 서		정 책 기 획 과
입 안 자	과 장	박 노 돈
	팀 장	박 미 선
	담 당 자	이 민 규 (480-6523)